

의안번호	2203746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4. 9. 13.
추 계 번호	24B357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1항 (재협의) 제3호 신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함 3. <u>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u>	의무규정
	안 제21조제1항 (변경협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u>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안 제32조제1항 (재협의) 제3호의2 신설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3의2.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u>	
	안 제33조제1항 (변경협의)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45조제5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호 신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음 3. <u>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u>	
	안 제46조의2 제1항(변경협의)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제1항 (재협의) 제3호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1조제1항 (변경협의)	
	안 제32조제1항 (재협의) 제3호의2 신설	
	안 제33조제1항 (변경협의)	
	안 제45조제5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호 신설	
	안 제46조의2 제1항(변경협의)	

2. 상세 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¹⁾ 등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협의·변경협의·재검토 등 대상으로 추가(안 제20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 안 제32조제1항, 안 제33조제1항, 안 제45조제5항, 안 제46조의2)
 -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²⁾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³⁾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각각 재협의·변경협의·재검토 등을 하도록 하는 것임
 -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현행법 제20조(재협의), 제21조(변경협의), 제32조(재협의),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라 재협의·변경협의·재검토를 한 사례는 총 7,776건으로, 재협의 등 소요비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건당 약 1.9억원, 환경영향평가는 건당 약 2억원이 소요되었음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 1] 최근 3년(2021~202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재협의·변경협의 등 실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계
제20조(개발기본계획 재협의)	8	12	14	34
제21조(개발기본계획 변경협의)	49	59	44	152
제32조(환경영향평가 재협의)	30	27	23	80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2,641	2,473	2,396	7,510
계	2,728	2,571	2,477	7,776

자료: 환경부

- 개정안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재협의·변경협의·재검토 등을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된 지역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될 곳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재협의·변경협의·재검토 등의 실시 건수를 예측할 수 없음

[표 2]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지정권자	지정 개소수	지정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환경부장관	¹ (진양호)	2005
야생생물 보호구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97	1980~2023

주: 2023.12. 기준

자료: 환경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